

CEO Report

#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김경선·강윤지

01 호  
2023.02



##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질병·상해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임

반려동물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보험시장도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 경쟁도가 매우 낮음. 반려동물보험은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회사별로 상품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상태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는 보험계약자(반려인)와 보험회사,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을 들 수 있음. 특히 진료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불투명하여 진료비 예측이 어렵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큼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보험회사는 손해율 관리 및 보장한도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당국이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개별적인 진료비 협상을 시도하고,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 또한, 반려동물보험의 보장내용을 세분화하고, 번들형 상품이나 정액형, 헬스케어 결합 상품 등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애견샵이나 CM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반려동물보험 가입상담 및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당국은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청구전산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개체 식별을 위한 반려동물등록제 개선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을 유인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I

## 검토 배경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총가구의 15%인 313만 가구로 추정되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73%는 개를, 18%는 고양이를, 5%는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는 것으로 추정됨<sup>1)</sup>
  - 체계적으로 집계된 반려동물 수는 없지만, 설문조사(5,000명)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2021년 반려동물 수는 개 518만 마리, 고양이 225만 마리임<sup>2)</sup>
- 반려동물의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침투율)은 0.8%에 불과함(〈그림 I-1〉, 〈그림 I-2〉 참조)
  -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반려견의 수명은 평균 15~20세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진료비 부담이 큰 8세 이상의 노령견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sup>3)</sup>
  - 설문조사에 따르면 1회 평균 진료비 지출 비용은 약 84,000원이고, 82.9%의 소비자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함<sup>4)</sup>
  - 2022년 10월 기준 국내 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는 약 6.1만 건<sup>5)</sup>으로 침투율<sup>6)</sup>은 0.8%이며, 이는 스웨덴(40.0%), 영국(25.0%), 미국(2.5%) 등 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sup>7)</sup>
-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현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펫보험 활성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림축산부와 금융당국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2022년 11월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함에 따라<sup>8)</sup> 기존 종합보험회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자회사 형태의 반려동물보험 특화 단종보험회사의 반려동물보험시장 진입이 허용됨
    - 반려동물은 재물로 분류되어 기간 손해보험회사만 반려동물보험 영업이 가능했으나, 규제 완화로 생명보험회사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반려동물보험시장 진출이 가능해짐

1) KOSIS,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표본부문(2020년) 주거실태 데이터(전국 20% 표본가구를 조사하여 추정한 데이터임)

2)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1)

3) 이화영·김현욱·심훈섭 외(2017)

4)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2021. 11. 24),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 84,000원, 소비자 진료비 부담 커”

5) 홍성원·전국보(2022); 2022년 10월 말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반려동물보험 가입자는 약 5.5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인구(720만 명)의 0.8%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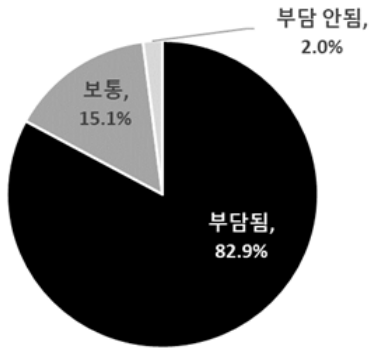
6) 반려동물 수 대비 계약 건수이며, 반려동물 수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정치인 개와 고양이 743만 마리를 이용함

7) Trupanion(2022. 11); NAPHIA(202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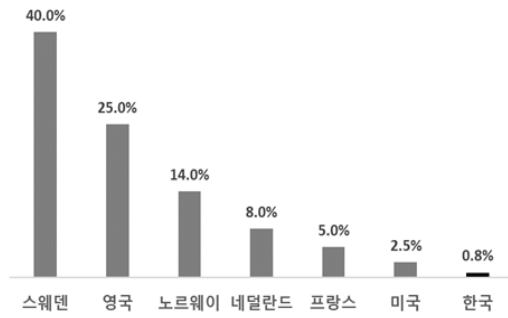
8) 금융위 보도자료(2022. 11. 21), “보험분야의 넓은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의 장애 요인과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그림 I-1〉 진료비 부담 정도



〈그림 I-2〉 반려동물보험 침투율



자료: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2021. 11. 24),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 84,000원, 소비자 진료비 부담 커” 자료: 흥성원·전국보(2022); Trupanion(2022); NAPHA(2022)

# II

##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문제점

### 1. 반려동물보험 시장 현황

- 과거 보험회사는 손해를 악화로 반려동물보험 판매를 중지한 바 있지만, 2014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기대하며 반려동물보험 출시를 늘려나가고 있음
  - 보험회사는 2008년 시행 예정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에 발맞추어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한 바 있으나, 손해율이 확대되며 판매를 중단하였음<sup>9)</sup>
  - 손해율 확대 배경으로는 보험계약자(반려인)와 보험회사 및 동물병원 간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 표준화된 진료체계의 부재 등이 있으며,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하여 손실을 본 것으로 보임
  - 한편 2014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보험회사는 반려동물보험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음
    -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2017년 3개사에 불과했으나 2023년 현재 11개사로 확대됨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은 회사별로 상품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상태임(〈표 II-1〉 참고)
  - 반려동물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술 및 입·통원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피부/구강/탈구질환이 기본계약으로 제공되는지 특약으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차별성이 거의 없음
    - 자기부담률, 가입금액, 보상한도 등도 유사함
    - 보험료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월 4~5만 원 수준에서 높게는 8~9만 원 수준임
  - 슬개골, 고관절 탈구 등에 대한 보장은 통상 1년의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고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되고 자기부담률이 높음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치이나, 소비자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반려동물보험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작은 규모이며, 일부 보험회사의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표 II-2〉 참고)
  - 2021년 기준 원수보험료는 216.9억 원으로 2019년(92억 원) 대비 약 2.4배 증가함

<sup>9)</sup> 김세중·김석영(2017)

-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1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CR1)은 약 80%, CR5<sup>10)</sup>는 96% 내외로 상당히 비경쟁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표 II-1〉 반려동물보험 상품 주요 내용

구분	A사	B사	C사
가입연령	만 10세까지 (갱신 시 만 20세까지)	만 10세까지 (갱신 시 만 19세까지)	만 8세까지
자기부담률	20%, 30%, 50%	20%, 30%, 50%	20%, 30%
가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술: 1일 150, 200만 원 한도</li> <li>• 입·통원: 1일 10, 15만 원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술비 확대 특약: 1회 200, 250만 원 한도/연 2회에 한함</li> <li>• 입·통원: 1일 10, 15만 원 한도</li> <li>• 상해, 질병사망 보험금: 1마리당 15만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연 보상한도 1000만 원</li> <li>• 수술: 1회 200, 250만 원 한도</li> <li>• 입·통원: 1일 15, 30만 원 한도</li> </ul>
피부/구강/ 탈구질환	기본계약	기본계약 (구강질환 미보장)	기본계약 (탈구질환은 특약)
배상책임	1,000만 원 (자기부담 3만 원)	500/1,000/3,000만 원 (자기부담 10만 원)	1,000만 원 (자기부담 3만 원)
면책기간	슬관절, 고관절 1년	피부병, 슬관절, 고관절 1년	슬관절, 고관절 탈구 등 1년
가입채널	전 채널	설계사, 대리점, CM	설계사, TM

주: A, B, C사의 장기상품 주요 내용임  
 자료: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약관을 참고함

〈표 II-2〉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원수보험료		
	'19	'20	'21
상위 1개사	74.2 (80.65)	126.2 (80.53)	175.4 (80.85)
상위 5개사	90.2 (98.01)	151.7 (96.79)	216.1 (99.63)
전체	92.0 (100.00)	156.7 (100.00)	216.9 (100.00)

주: ( ) 안은 시장점유율임  
 자료: 손해보험협회

<sup>10)</sup> CR5(Concentrate Ratio 5)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집중도를 의미함



- 반려동물보험은 주로 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소비자의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보임
  - 반려동물보험의 판매채널은 대면, TM, CM 채널 등이 있으나, 전 채널을 활용하더라도 대면채널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채널의 비중은 미미함
    -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설계사나 특정 대리점을 통해서만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으며, CM 채널은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일부 소비자는 반려동물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도 함<sup>11)</sup>

## 2. 반려동물보험 관련 제도

- 앞서 언급한 과거 반려동물보험 판매 중단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 상품 공급 측면에서는 반려동물 보험의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본 절에서는 손해율 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 진료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불투명하여 진료비 예측이 어렵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큼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손해율 관리 및 보장한도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 식별, 질병명 및 진료행위 분류체계, 청구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반려동물 보험 혁신을 위한 진입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함
-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개체 식별 및 연령 판별에 활용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내장형 등록률은 50%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기등록된 반려동물의 관리도 미흡한 실정임
  -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요구되는 반려동물의 사진만으로는 완벽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반려동물등록이 필요함
  -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sup>12)</sup>과 등록 반려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내장형 신규 등록 비율은 50% 내외로 20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음(〈그림 II-1〉, 〈그림 II-2〉 참조)
    - 동물등록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가능하며,<sup>13)</sup>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한 내장형으로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021년 기준 46.6%에 그침
    - 반려묘는 등록 의무화 대상이 아니며, 전체 반려묘 225만 마리 중 0.7%만이 등록함<sup>14)</sup>

11) 문화체육관광부(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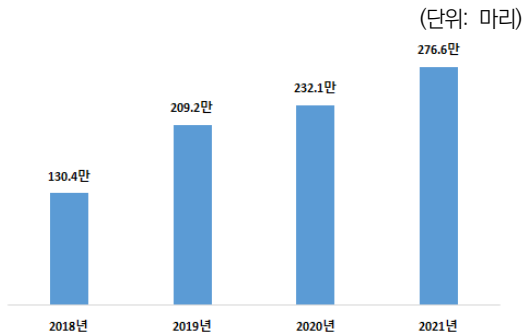
1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 1. 7),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함. 50.1%(’19) → 50.6%(’20) → 55.2%(’21)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춘천시에 한하여 한시적(2022년 1~8월)으로 안면·비문인식을 통한 동물등록을 허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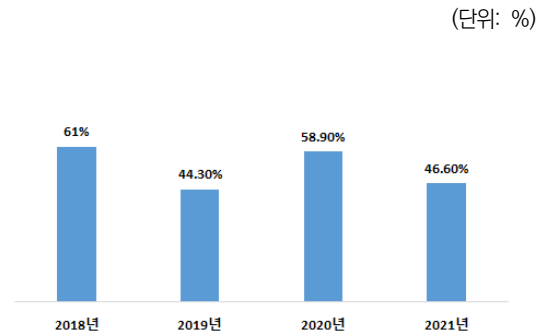
14) 2022년 2월부터 반려묘 대상 동물등록(내장형)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나, 등록 마리 수는 2021년 기준 전체 반려묘 225만 마리 중 0.7%인 1만 6,700여만 마리에 불과함

- 기등록된 반려동물의 유실, 사망 등에 대한 신고 관리가 미흡하고, 반려인의 요구만으로 동물등록 변경(품종, 생년월일 등)이 허용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존재함

〈그림 II-1〉 반려견 등록 누계 현황



〈그림 II-2〉 연도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신규 등록 비율



자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동물병원의 질병명 및 진료행위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크며,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어 진료비 정보에 상당한 비대칭성이 존재함
  - 동일한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질병명과 진료행위 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양질의 통계 집적이 어려움<sup>15)</sup>
  - 진료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불투명하여 진료비 예측이 어렵고,<sup>16)</sup>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큼에 따라<sup>17)</sup>18) 합리적인 보험료·보상한도 산출 및 신상품 개발에 한계가 존재함
  - 현행 수의사법에는 구체적인 의료기록이 담긴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발급 조항이 부재하여,<sup>19)</sup>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진료비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되는 구조임

15) 2022년 1월 신설된 수의사법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40~100개)를 작성·고시하고 2025년부터 매년 표준화대상(10~20개)을 선정·추가 고시할 예정이나, 표준화 완료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함

16)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수의사 2인 이상의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게시하고,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여야 함

17) 권용수(2021)에 따르면 동물병원 간에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가 무려 80배나 차이가 나는 항목도 있음

18) 허은아 의원실(2022. 8. 9)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 한국소비자연맹 발표자료; 동물병원별로 중성화 수술비(약 5배), 예방접종비용(2~7.5배), 복부초음파/혈액검사 및 X-ray 관련 검사비용(3.7~13.3배), 치과비용(22~80배), 입원비용(3.3~4.5배)에서 상당한 진료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19)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현재 이성만(2020. 7. 15), 홍성국(2021. 6. 14), 정청래(2021. 6. 23), 안병길(2022. 7. 19)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 계류 중임

○ 반려동물보험 보험금 청구전산화 시스템의 미비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낮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려움

- 보험개발원은 2019년 5월 '반려동물원스톱진료청구시스템(POS)'을 구축하였으며, 동물병원 전자차트(EMR)와 연동하여 보험회사가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보험 보험금 청구는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종이 영수증을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종이 영수증은 진료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카드이용금액만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명확한 손해 사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존재함
- 청구전산화를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작성 시 전자차트 활용 및 진료기록부의 외부 제공 등 동물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진료행위 및 진료비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구전산화에 대한 수의사들의 거부감이 존재함

○ 한편,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혁신과 신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지만,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반려동물보험 특화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21년 6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었으나, 1년이 넘는 현재까지 소액단기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소액단기보험은 1년 단위로 보험이 갱신되므로<sup>20)</sup> 평준보험료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노령의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총수입보험료 한도(연간 500억 원)가 존재하여 확장성이 낮음
  - 자회사 형태의 단종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취급 가능한 보험 특성상 반려동물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은 자본금 요건이 20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나, 여타 인적·물적 요건이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여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이 높음<sup>21)</sup>
  - 국내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종합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산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2023년부터 IFRS17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음

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3. 12),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12.~4.2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나,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함

21) 노건엽·조영현·이승주(2021)

# III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 1. 경영과제

-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진료비 협상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음
  - 진료체계 및 진료비 표준화는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의 제휴 또는 경영지원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동물병원의 네트워크 편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국내에서는 수의사법상 알선 행위 금지<sup>22)</sup> 및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금지에 저촉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 동물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 과잉진료 및 부정청구가 확인되는 동물병원과는 제휴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번들형, 정액형 등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함께 보장하는 번들형 상품 혹은 반려동물 진료빈도가 높은 특정 질병에 대한 수술이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부를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 개발을 검토할 수 있음
  - 보험상품과 반려동물 헬스케어를 결합하여 제공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증진 활동에 따른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상품 소구력을 제고하고 진료비 절감을 유인할 수 있음
  - 반려동물 원격 건강 상담 및 행동교정·상담(Pet Behavior Counsellor), 외출 중 반려동물 모니터링·원격 케어, 반려동물 케어 시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반려동물보험의 가입률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가입 상담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반려동물보험의 주요 판매 채널은 설계사 채널이나, 애견샵, CM(Cyber Marketing) 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sup>22)</sup>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제5항에 의거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됨

- 반려동물 분양 시 보험가입 상담이 가능하도록 애견샵 채널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비가 작은 CM 채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낮은 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효율적인 상품 비교 및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젊은 세대<sup>23)</sup>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을 검토할 수 있음
  - 금융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는 보험회사별 상품별 담보범위, 자기부담금, 면책기간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손쉬운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 2. 정책과제

- 당국은 반려동물등록제를 개선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양육 비중이 높은 반려묘도 등록시스템 내 관리 대상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이 저조한 가운데,<sup>24)</sup> 그 대안으로 반려견의 코주름을 이용한 비문(鼻紋)인식이나 홍채인식, DNA인식 등이 제시됨
    -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반려동물 안면·비문인식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생체인증을 통한 동물등록 허용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음
  - 동물등록·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개체식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등록정보조회서비스(API)의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반려견 중복등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등록된 반려동물의 유실, 사망 관리를 활성화 하여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진료체계 표준화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질병명·진료행위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이를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각기 다른 진료용어와 진료표준절차를 통일하여 동물병원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함
    - 특히 진료기록부 작성 시 질병명, 치료방법 등 진료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료기록부 양식이 필요함

<sup>23)</sup>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19)

<sup>24)</sup> 김현중·이정민·이형용(2019)

- 최종적으로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현실성 있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진료통계가 집적된 이후, 연구용역을 통한 다양한 쟁점 검토와 수의업계의 의견 반영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 독일은 GOT(수의사를 위한 수가제도)에 의거 진료비 하한선의 3배 이상의 진료비 청구가 금지됨<sup>25)</sup>
- 당국은 반려동물보험 청구전산화를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심사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청구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진료내역 정보가 부실한 종이 영수증 대신 동물병원 전자차트(EMR) 기록을 보험회사가 전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가 가능함
  - 진료기록부 작성과 제공에 대한 수의업계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구전산화 시행 준비단계에서 수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수의사 등 전문 인력과 손해사정의 합리적인 기준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구전산화가 보험금 지급거절의 불합리한 근거로 활용될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 건강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건강관리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의 종, 성별 및 생애주기별 주요 질환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반려동물 예방의료(Preventive Healthcare), 치아관리(Dental Care), 행동관리(Behavior Management), 영양 평가(Nutritional Assessment), 생애주기(Life Cycle)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동물병원협회와 수의사회가 국가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연령대와 질환별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음<sup>26)</sup>
    - 반려동물의 질환 특성은 국가마다 다르며, 국내 반려동물에 맞는 건강관리 지침 마련을 위해서는 동물 병원 전자차트 데이터의 집적 및 관리가 전제되어야 함<sup>27)</sup>
  -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로 사전적·예방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동물병원 진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보험회사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다양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플레이어의 반려동물보험시장 진입을 유인하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 하고, 연간 총수입보험료(500억 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본은 200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보험기간은 2년 이내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겸업이 가능함
    - 보험기간 연장 및 연간 총수입보험료 한도 확대를 고려할 경우, 소액단기보험의 특성을 감안하되 자본금 요건을 상향조정하거나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5) 단, 3배 범위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함

26) <https://www.aaha.org/aaha-guidelines/what-are-aaha-guidelines/>

27) 유기진·이영석·이현규(2019)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국내 환경을 감안하여 상품 심사, 외부 감사, 지급여력규제 등에서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sup>28)</sup>

〈표 Ⅲ-1〉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책과제와 기대 효과

과제		기대 효과	
경영 과제	보험회사와 동물병원 간 네트워크 형성	• 동물병원 진료비 협상 및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완화	
	다양한 상품 개발	요율 세분화, 번들형 상품, 정액형 상품, 부가서비스 제공	• 소비자 니즈 충족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리워드 제공	• 보험가입자의 사전적 도덕적 해이 방지, 진료비 절감
	판매채널 다변화		• 보험가입 필요성 및 인식 제고, 소비자 접근성 강화 • 보험상품의 비교·가입 및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정책 과제	제도적 인프라 마련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진료체계 표준화	•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비교·선택 기반 확립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청구전산화	• 진료비 정보 비대칭 완화 • (의료공급자) 과잉진료·청구 방지 • (보험회사) 손해를 관리, 합리적인 보험료 및 보상한도 산출, 다양한 상품 개발 • (소비자) 진료비 정보 접근성·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침 마련		• 반려동물의 사전적·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진료비 절감 • 건강관리 지침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소액단기보험 규제 완화		•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촉진, 시장 경쟁 활성화

<sup>28)</sup>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사전신고만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하며, 자본금 3억 엔 이상일 때만 외부 감사가 의무화됨. 특히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간소화된 방식의 지급여력규제를 적용받음. 일본 금융청(2022. 4. 6)에 따르면 2022년 신지급여력제도 필드 테스트에서 통계 등이 부족한 소액단기보험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계수와 준비금계수는 35%와 40%이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해서는 15%와 30%를 적용함

## 참고문헌

- 권용수(2021),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법조협회, 제70권 제1호
- 김경선(2022), 「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기술 활용」, 보험연구원
- 김세중·김석영(2017),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김현중·이정민·이형용(2019),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건엽·조영현·이승주(202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험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1),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19), 「반려동물 관련 인식 조사」
- 유기진·이영석·이현규(2019), 「전자차트데이터 기반 반려동물 생애주기 분류 기법」, 디지털콘텐츠 학회논문지
- 이화영·김현욱·심훈섭·심준원·오민영·이혜원·전진경(2017),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 홍성원·전국보(2022), 「반려동물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분석」, 『CIS이슈리포트』, 한국신용정보원
- 일본 금융청(2022. 4. 6), “경제가치베이스의 솔벤시규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잠정안”
- NAPHIA(2022. 5)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22 Highlights”
- Trupanion(2022. 11) “Investor Presentation”



## 저자약력

김경선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unnykim@kiri.or.kr

강윤지 University of Köln 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oonjikhang@kiri.or.kr

### CEO Report 2023-01호

####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발행일 2023년 02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